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수 신 처	언론사 사회부
(경 유)	담당 기자
제 목	<성명>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1.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KT는 2014년 9천여명 명예퇴직 후 업무지원단(cft)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41개의 cft 사무실 주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관리자가 ‘성향분석’이란 이름으로 cft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민감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센터)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센터는 9월 20일에 해당 cctv에 대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회사에 철거를 하도록 안내하겠다고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성향분석에 담긴 민감정보에 대해 미동의 처리를 했을 경우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기에 경찰로 이관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3. 이에 저희 단체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들 및 kt민주화 연대는 kt의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니 각 언론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담당 : 채민(상임활동가, 010-8639-0214)

[첨부] 성명서 1부 및 참고자료 3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담당 : 채민

시행 : 17-05 (2017. 9. 26)

[560-0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46-8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공동대표 : 문규현, 송기춘

접 수 : (. .)

누리집 <http://www.onespark.or.kr>

E-mail: onespark98@gmail.com

[성명]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9월 20일에 전북지역 kt노동자의 문제제기에 kt(회장 황창규)의 업무지원단(이하 cft) 41개 팀의 사무실 출입구 주변 cctv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한 경기도 cft 관리자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2014년에 작성한 '성향분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관할 경찰서 이관함을 통보했다. 이에 우리는 kt에 해당 cctv를 모두 철거할 것과 퇴출조직 cft 해체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과 노동부의 강력한 조사를 비롯해 노동감시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센터의 처리 결과를 보면 먼저 cft 사무실 주변 cctv가 회사의 주장처럼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목적만으로 보기 어려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해당 cctv만 유독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핸드폰 등으로 노동자에 대해 밀착 감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두 번째로 입증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cft 경기11팀 성향분석>가 노조 가입 등 민감정보를 처리했으며, 이에 대한 미동의 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당연하게도 해당 문서를 작성한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받은 일은 없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되었던 사례 외에도 cft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감시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cft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사생활 감시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징계를 가한 사례 또한 있다. 이에 대해 올해 4월 법원은 앱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의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cctv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감시, 노동자 성향분석 등은 노동감시며 명백한 노동인권침해다. 노동자들은 감시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노조 등을 통한 공동의 대응에 나서는데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kt에선 관리자의 감시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노동감시가 지속된다면 노동자 스스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다. kt노동자들과 사회운동단체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듯이 cft 조직 운영은 퇴출 프로그램(CP)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당노동행위다.

노동감시는 비단 kt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시민사회·인권운동은 노동감시가 개별적인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서 만연해 있으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7년과 올해 2월에 일터의 노동감시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만큼 정부와 국회가 노동감시가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이번 결과 통보에 대하여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노동부 역

시 경기도 외 지역의 cft에 대한 노동감시 등 부당노동행위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적폐청산을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이미 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노동자 정보인권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인권위의 2017년 권고를 수용했다. 노동부는 이제 가이드라인 개선에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노동감시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등 이미 제기된 kt 노동탄압 관련 의혹들과 함께 노동감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황창규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를 더 세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노동감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노동감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kt는 cft 감시 cctv를 즉각 철거하고, 퇴출조직 cft를 해체하라!
- 경찰과 노동부는 노동감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 정부와 국회는 kt를 비롯한 기업의 노동감시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9월 26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애여성공감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t민주화연대
(한글순, 총 28개 단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위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T그룹 적폐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kt민주화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연합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민중정당,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사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전북대책위,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개 인 정 보 침 해 신 고 센 터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전화 061-820-1888/팩스 061-820-2419/전자우편 beenil@kisa.or.kr/담당 김재훈 조사관

사건번호 : 170531-00003, 170802-00002

시행일자 : 2017.09.20.

수 신 : 원○○ 님

제 목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 결과 통보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김재훈 조사관입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고인께서는 ㈜KT(이하 ‘피신고인’이라 함)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함)를 안내판에 고지된 목적외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노동조합의 가입여부 등 민감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하셨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진행한 사실조사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먼저 ‘목적 외 CCTV 설치·운영’ 관련입니다. 본 내용은 업무지원단 사무실(산하 41개 팀)을 대상으로 설치된 CCTV에 한함을 미리 밝히오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피신고인은 각 지부(팀)별 1대씩 총 41대의 CCTV를 사무실 출입구 주변 복도 천장에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CCTV의 설치 목적에 대해 피신고인은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해당 사실은 피신고인이 제출한 CCTV 설치도면과 현장 방문(3개팀 선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나, 범죄 예방 및 수사·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고인이 설치한 CCTV는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인 피신고인 소유의 건물 '복도' 천장에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비공개 장소'의 해석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법리적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법리적 검토의 진행과 더불어, 신고인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신고인에게 업무지원단 주변에 설치·운영 중인 CCTV를 철거 조치하는 등 개선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감정보 무단수집' 관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는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수집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제3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고인이 노동조합의 가입 등 민감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나, 만약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 동의 미획득과 같은 불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벌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동 사안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 이관할 예정이며 이후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에 관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직인생략)

[첨부3]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kt 업무지원단 성향분석

■ KT업무지원단 경기지원 11팀 성향분석

A	B	C	D	E
성명	직함	직급구분	주요업종	비고
	CT위생 장	부	CT충돌지 피(다용전력 구상)	구서울지방본부위원장
	CT강화 대표	부	CT강화대 표/직업대 표	전남충동충남구 민주노동시절 권동이장 2층/충남신 광시 광안 방백한 것으로 보임
	11팀 지 장	팀	직업장구 표	전통하나 강원 의지부주관들주동하고 있음
	부	팀	직업장구 표/직업 장/직업 장	전국 1개팀 대표으로선 아버지(구비원/송기) 대표로직 업위기를 강요으로선(충동)구 하디 있음
	부	팀		전통한 면이나 서양 관할 정계들반을 이렸 있음/전통한 서로 강성들보임
	부	팀		성안이 급하게 올라오는것들보임/ 대표하기 어려움/거 단장이며 자기방어 주장이 무리 있음
	부	팀		단순한성안이냐 집단충동에 관한면들보임/구원 있음 많이 있음(보통우 재영 있음)
	부	부		성안이 커심하여 KT에 대한 항복보통 등 나들 부속하여 전 원들 거절해당 있게 됨(충동)전 해준/어부인 있음/ 이디 히 선동하는기질이 있음
	부	부		전통한 면이며 배틀하게 보아는것임 있음
	부	부		전통한 면이며 자기 주관이 부패한 주보관장이 부패되어 배임하는성적이나 대표하기 어려움(권으로 있음)
	부	부		전적이 급한 면이나 전파하게 된안각 디 배탈 하디 있음 임/오늘서 정한 직장 외할수함

[첨부4] 관련기사

<참소리> KT의 집요했던 괴롭힘, 산재 인정

<http://cham-sori.net/news/167669>

<광주드림> “KT, 노동 감시 ‘앱’ 거부해 정직 1개월”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8420&trackback=1

<한겨레>법원 “‘개인정보 침해 우려’ 회사 앱 설치 거부한 노동자 징계는 부당”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9956.html#csidx96fbc9aa3ba128b93fa2e9ec06b6f25>

<참소리> "CCTV는 물론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KT, 정부가 나서야“

<http://cham-sori.net/news/169413>

<경향> 구조조정 뒤 ‘명퇴 거부자 감시 CCTV’ 논란…정부, 3년 만에 KT 현장 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60600005&code=940702

<한겨레> 노동자 목 조이는 CCTV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7346.html>

<한겨레> 인권위 “직장내 ‘전자감시’ 정보인권 위협”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82933.html#csidx35f659ad563524dab671d7338b37bfb>

<경향신문> 노동부, ‘전자감시 근로자 인권 보호’ 인권위의 권고 수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706141409001&code=940100#csidx7cc2f6cc9a4b998ad250749497d06e0